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

이 동 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미술 관련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3 미술 창작·전시 분야 관련 법·제도적 쟁점

-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의 도입

- 창작 및 전시 지원

4 미술 유통 관련 법·제도적 쟁점

-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

 -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신고제

5 미술 향유 관련 법·제도적 쟁점

- 지역미술 활성화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6 공공 영역에서의 「미술품 감정 시스템」 구축

- 미술품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 범위

7 전담 기관의 설립 - 미술진흥원

-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 감정센터와 미술은행 등

-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 연구 배경

- 미술 분야의 경우 매체와 재료의 확장과 더불어 기술과의 적극적인 결합이 시작되었으며,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현·공표 방법의 등장과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의 발생은 예술의 창작뿐 아니라 유통, 소비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아날로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물성 기반 작업(object-based work)과 달리 비물성 기반 작업(nonobject-based work)은 미술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전시'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미술품의 향유 방식이 활발해지고 있음. 아울러 화랑, 경매, 아트페어와 같은 전통적인 미술품 유통 플랫폼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공유 플랫폼,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 (Non-Fungible Token) 미술시장의 등장을 비롯하여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됨. 아울러 미술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이 감상이나 공간 장식 목적을 넘어 투자의 대상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커짐.

■ 연구의 필요성

- 따라서 미술 창작, 전시, 유통, 향유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술품의 유통 구조의 현대화를 비롯한 유통활성화와 함께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
- 문화예술정책의 모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장르가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진흥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함. 미술 분야 법률이 명확한 원칙이나 가치 확립 없이 미술(응용미술을 포함)분야 내 일부 세부 장르인 공예(「공예문화산업진흥법」), 서예(「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미술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수의 운영 기관들에 의한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화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내 주요 장르로서의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 등 미술분야 내 생태적 기능체계를 재구성하여 미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아울러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미술 활성화를 통해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의 생태계 전반을 안정

적으로 정상화할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술시장의 근간이 되는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설정,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검토와 기획·전시·유통·감정 등 매개 분야를 정비하여 국내 실정에 적용가능한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한 미술 분야 법제 및 급변하는 미술생태계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술 분야 법령의 실효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진흥법(가칭)」)의 제정 방향을 모색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미술 관련 법체계를 「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현재 미술 관련 법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법제 하에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상과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하여 진단함. 둘째 미술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함. 이를 통해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과 타 법률들과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아울러 해외 미술진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미술 분야 법 제도의 큰 틀에서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및 지향 목표를 제시하고 제정(안)을 제시함.

2 미술 관련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 미술 관련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가. 미술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취하고 있는 장르 및 부문의 열거식 정의 방식은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열거 방식은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과 비예술부문과의 통섭과 융·복합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보호나 공적지원 대상에서 배제 또는 누락되는 등 ‘법의 지체’ 현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새로운 장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를 보여줌.¹⁾ 반면 열거방식의 대안으로 ‘미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장르나 부문을 예시 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식(예: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산업’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은 열거방식보다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대상을 보다 폭넓게 정의할 수 있고, 핵심적인 속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시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1) 양혜원 외,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p.

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혼용적인 방식의 경우에도 예시로 제시된 장르에 포함되지 못하는 활동은 법의 적용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하고 있음.

- 따라서 '시각적 매체의 이용'을 주 개념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영상, 건축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는 장르의 경우 미술진흥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나. 미술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에 대한 개념 정의와 별개로,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공예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됨. 이러한 기술 방식을 감안할 때 ‘미술’에 대한 정의와 별개로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의 법적 개념이 필요함.

다. 미술기록물

-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술기록물’의 법적 개념도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규정하고 있음. 기록은 문자,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된 ‘내용’과 이를 서식, 단락, 글자크기 등 특정의 물리적 특성과 양식으로써 구현되도록 한 ‘구조’, 기록이 생산되도록 한 정황을 나타내어 기록의 이해를 돕는 ‘맥락’의 3가지 주요한 기본 요소로 이루어 있는데 기관·조직에서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고 해당 기록을 현재 업무수행에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경우 현용기록으로 분류되며, 업무 종결 후 참고로 활용되는 기록은 준현용기록, 일정기간 경과 후 완전히 종결되어 업무상 활용되는 일은 드물지만 영구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기록으로서 관리되는 기록을 비현용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음.²⁾

2) 기록학용어사전, 한국기록학회.

라. 미술 관련 서비스업

- 미술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향유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통업이나 감정업, 전시업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음.
- 미술품 유통의 경우 화랑이나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통한 미술품 판매나 증개, 전문 업체를 통해 미술품이 대여되는 경우 이외에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미술품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판매하는 공유 플랫폼이 등장함.
- 또한 대안공간의 경우 미술관의 권위주의와 상업 화랑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작가나 기획자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비영리적인 전시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 활동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품 대여업체의 경우 미술품 대여 뿐 아니라 일정한 대여 기간이 지난 후 작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대여 기간에 따라 지급된 대여료의 일부나 전액을 구매대금에서 할인해 주고 있음.
- 화랑이나 미술관, 비엔날레 등을 통한 전통적인 전시 이외에 전문전시업체를 통해 기획·운영되는 전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시 등 전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미술진흥법상 적용대상인 미술 관련 서비스업은 전통적인 미술품 유통업으로 볼 수 있는 화랑업이나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업 이외의 유통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전시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정된 분류체계는 없으며 관련 산업 통계생산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문화예술산업 분류 상 시각 예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다만 이 분류는 문화예술산업상 분류 체계로 미술품 자체가 아닌 미술용품의 제조나 유통에 관한 업을 비롯하여 미술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는 미술진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제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일련의 예술활동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제6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미술품 유통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 가. 화랑업: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대여,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나. 미술품 경매업: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다. 미술품 대여업: 가목 이외에 업으로서 미술품을 대여하는 업
라. 기타 미술품 유통업: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하여, 위 가목부터 다목 이외의 방법으로 중개,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
마. 미술품 자문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
7.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신고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
나. 미술 전시업을 하는 자
9.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법에서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미술 창작 · 전시 분야 관련 법·제도적 쟁점

■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의 도입

가. 개요

-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resale right)은 일반적으로 미술품 원본의 소유권을 작가가 양도한 후에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하여 매매가 또는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유럽연합 FTA 제6차 협상의 결과로 협정이 발효된 후 양측은 2년 내에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도입에 관한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그러나 향후 어떤 형태로든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 개시가 예정된 상황임.

나.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관련 쟁점³⁾

□ 적용 대상 미술품

-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함. 그러나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을 저작물로 한정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지 못하거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미술품들이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며 재판매보상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성에 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유형의 미술품을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 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인 미술품 판매의 일회성을 감안하여 인정되었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복제물의 경우 미술인이 직접 만들거나 그의 책임 하에 만들어진 제한된 부수의 복제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대량 복제를 전제로 한 응용미술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초기 적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행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범위

-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인 미술품 재판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인간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인 간의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화랑이나 미술상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 재판매의 경우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거나 거래이력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자발적 신고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초기 시장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경매의 경우 경매회사가 경매 전 매매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경매 후 낙찰가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은 매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매매가와 같은 매매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음. 경매가 미술품 재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⁴⁾ 일부 미술품 재판매에만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⁵⁾ 이러한 유형의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미술품 판매를 사적 매매 시장을 비롯한 1차 미술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미술상에 비하여 경매회사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⁶⁾ 그러나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처럼 도입 단계에서는 화랑을 비롯한 미술상을 통한 재판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 경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3)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참고.

4) Carole M. Vickers, Comment, The Applicability of the Droit de Suite In the United States, 3 B.C. INT'L & COMP. L. REV. 433, 463 (1980).

5) Carole M. Vickers, 앞의 글, p.463.

6) John Henry Merryman, The Wrath of Robert Rauschenberg, 41 AM. J. COMP. L. 103, 123 (1993).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적용을 통하여 징수분배비용이 재판매보상금 지급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최저가격 기준이 높을수록 징수·분배를 위한 관리 비용에서 보다 자유롭지만 재판매보상금 규모 축소에 따라 혜택을 향유하는 미술인의 수가 감소함. 최저가격 기준이 낮거나 없는 경우 재판매보상금 규모는 커지고 혜택을 향유하는 미술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징수·분배를 위한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됨.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미술품의 가격 비율과 EU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판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호할 이익과 미술품 소유권자를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경우 재판매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EU 입법례를 감안하여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을 제외함. 또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화랑이나 기타 미술상을 통한 재판매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1차 미술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화랑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화랑이나 미술상이 미술인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을 직접 구매하여 비교적 단기간 이내에 해당 미술품을 소정의 재판매가 이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나 화랑이나 미술상 고객에게 판매했던 미술품을 해당 고객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화랑이나 미술상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판매보상금 최고 한도

- 따라서 재판매보상금에 총액제한을 두는 것은 저작권의 전통과 배치되고 미술품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미술인이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재판매보상금 발생을 억제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지 않는 국가의 시장으로 고가의 미술품 시장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액 제한은 필요함.

□ 보호기간

- 해외 입법례와 유사하게 미술인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존속하도록 하되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현실과 도입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보호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한 후 추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집행방식

- 작가나 그의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관리하고 후속판매를 모니터링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미술품 경매업자를 상대로 직접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관리가 효율적임. 집중관리단체는 미술 시장과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음. 아울러 해당 집중관리단체는 해외의 집중관리단체들과의 상호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서 징수되는 재판매보상금을 용이하게 분배받을 수 있음. 미술품 경매업자의 입장에서라도 개별적인 재판매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제0조(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 진흥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규정, 수수료 징수, 재판매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제공청구권

-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매매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시 정보제공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정보제공청구권은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정보 부재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강제적 집중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정보제공요청권 역시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도의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아울러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신원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정보를 수령한 미술인이나 집중관리단체에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제0조(정보제공청구권) ① 제0조제0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범위,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과 규정

-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내 미술시장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타 세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함.

■ 창작 및 전시 지원

가. 창작활동의 지원

-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미술진흥이며 이 가운데 창작활동 지원과 전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법은 창작활동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창작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기제정 법률과 다른 차별화된 지원이 기대됨.

나. 창작공간 등의 확충

- 미술 창작, 전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유지보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공원 조성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함.
- 창작공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 소유의 창작공간 등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0조(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창작공간 등의 확충)(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전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등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분야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0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미술 유통 관련 법·제도적 쟁점

■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 미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미술생태계의 저변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미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생태계의 기본 축인 유통 분야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도모되어야 함.

제0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0조(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함. 아울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0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미술품 유통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

-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미술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 미술시장은 소수 컬렉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층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음.

- 특히 미술품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눠서 구매한 뒤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생김.
- 그간 미술 관련 제도나 지원이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 미술관 및 박물관, 화랑 등에 집중되어 온 반면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소비자는 간과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건전한 미술품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제도 운영이 필요함.

제0조(소비자 보호)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판매자의 진품 보증 책임 부담

-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소장자를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작품 판매자 명의를 작가나 소장자로 하는 경우 작가나 소장자와 화랑 등 사이의 계약을 중개계약으로 해석되고, 화랑 등이 작품 판매자로 나서는 경우 위탁매매계약이 됨. 중개업과 위탁매매업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됨.
-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는 1) 작가, 2)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임.

□ 진품증명서의 발급

- 미술품의 매체 및 유형의 특성이나 유통 방식을 감안한 사항들이 진품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에디션 작품의 경우 작가 성명, 작가의 서명, 매체 또는 처리방식, 창작 시기, 제작 시기, 전체 에디션 규모와 해당 작품의 번호, 작가 사후 복본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0조(소비자 보호) ② 작가 또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제

- 미술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품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판매하는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분할 소유 플랫폼 업체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유통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등록제나 허가제의 경우 공권력을 활용한 일종의 정부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지자체가 규제 준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은 소비자에게 미술 향유나 미술품 구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술품 감정업의 경우 미술진흥법 시행 후 바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감정업자에게 공적 자격을 부여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후 교육을 통하여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과 달리 미술 전시업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당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이 법 시행 당시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지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도록 함.
- 신고제의 취지인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신고서상 기재 사항은 상호(개인인 경우에는 서비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 함. 다만 소비자 보호라는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제 취지를 감안하여 업무개시일(최초 사업자 등록일), 업무 형태(예: 화랑업의 경우 전속작가 유무 및 수, 미술품 경매업의 경우 경매 유형(오프라인 경매, 온라인경매, 해외경매) 및 횟수, 미술품 대여업의 경우 대여가능 작품 수 등), 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대여업의 경우 약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무 임직원 수를 포함한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술품을 유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

12조) 규정을 감안하여 도메인 네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신고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신고 사항을 공공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

제0조(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유통업자”라 한다) 또는 미술품 감정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감정업자”라 한다)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부칙

제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제0조제0호에 해당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0조(미술품 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술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미술품 유통업의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5 미술 향유 관련 법·제도적 쟁점

■ 지역미술 활성화

- 기존의 창작, 기획, 전시,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전시관람 및 공급률의 지역 간 편차는 미술향유에 있어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 문화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제4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5조 제3항). 이처럼 문화향유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문화참여권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교육권, 환경권 등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있으며 환경권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문화환경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하여서만 문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소극적인 관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권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미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임.

제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0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가. 필요성

-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은 화랑, 아트페어,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미술작품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술시장 관련 콘텐츠(거래정보 통계, 시장 동향 분석 등)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소재 해외갤러리의 유통 현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미술판매가를 비롯해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확인은 쉽지 않음.
- 미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비롯하여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환경 조성 및 정부미술품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통합미술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 구축 정보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현황
- 미술진흥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되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사항
- 감정 관련 선행 연구 및 감정센터가 정립한 감정 기초 자료 및 과학적 분석 방법 및 기준 자료
-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 정보(저작권 정보 포함) 및 해당 미술품의 대여 및 전시 현황

□ 제공 정보 및 공개 범위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정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업종,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으로 제한함.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은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에 대한 일반인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도 소개)를 제공함. 또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적용 대상

미술품 재판매에 대해 미술품의 제호, 작가의 성명, 재판매보상금 지급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재판매일자 및 재판매가에 관한 정보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정보 중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미술품의 제호, 작가의 성명, 재판매일자는 일반에게 공개하며 재판매보상금 청구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매보상금 지급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재판매가를 공개하지 않음. 또한 징수된 재판매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 및 대상,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담당자 및 연락처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함.

- 감정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감정 기준 자료를 축적하고 미술계에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결과물, 감정센터가 구축한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 및 기준자료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구축함. 다만 감정센터의 감정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감정 기초 자료와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 및 기준자료의 경우 민간 감정단체를 비롯한 소정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공개함.
-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정부미술품(정부 소유 건축물미술작품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위탁을 맡긴 미술품에 대한 정보(저작권 정보 포함), 해당 미술품들의 전시 및 대여 현황 정보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에 구축하고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의 전시 및 대여, 저작권 활용을 위한 절차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미술은행이 소장·관리하는 미술품의 목록과 전시 및 대여 현황,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해당 작품의 대여를 위한 대여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작품가는 대여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여기관에 한정해서 공개함.

제0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미술품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 범위

가. 감정센터 설립 필요성

□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감정 시스템의 부재

- 미술품 감정의 문제는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오고 있으며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특히 그동안 사인 간 또는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여, 행정,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미술품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함.
- 따라서 행정적·사법적 필요를 위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행위를 위한 판단자료나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 미술품 감정시스템을 우선 문화행정 영역에서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시책을 펼치면서 유통 영역의 감정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전시키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함. 행정 영역에서 감정 평가시스템이 먼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인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그간 발의된 미술품 유통법안과 같이 감정연구센터의 역할을 사인 간의 민사분쟁에 관계하고, 형사사건에 감정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미술품 감정에 국가 영역에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감정센터는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을 실시함으로써 감정센터의 감정서에 의하여 시장 유통영역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기술의 축적과 감정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추후 미술시장 전체의 감정 체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감정 기초 자료의 미정립

- 감정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체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울러 국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인문학적 평가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작품의 이용된 재료와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함.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근현대미술의 재료, 기법, 자료의 구축,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의 정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미술품 감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감정 인력 양성의 한계

- 다양한 감정 인력 교육 사업들이 그간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미술감정 인력 양성과 감정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감정 인력 양성사업이 공모를 통한 감정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감정 전문인력을 위한 해외 감정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문학 및 과학적 소양을 갖춘 감정인력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양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리서치 결과물의 실질적 활용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그간의 감정 인력 양성은 시가 감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래 감정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감정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과 운용이 필요함.

나. 감정센터의 업무

□ 미술품 감정 및 상태조사

- 감정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될 필요가 있음.
-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시스템에서 미술품의 평가가 행해지고 있음. 다만, 재평가는 일부 작품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처분은 최소한으로만 행해지고 있으며 매각은 이루지지 않고 있음.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소장 미술품을 재조사하면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서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됨. 따라서 정부미술품의 구입, 대여, 매각 및 처분, 재평가 작업에 미술품의 평가 시스템이 감정센터의 업무가 되어야 함.
-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증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하여야 함. 기증이 신청되어 접수된 경우,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증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만일 기증받더라도 해당 미술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미술품의 출처 및 소유권 등 수증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정부미술품으로서 적합한 심미적 가치가 없는 미술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증하여서는 안 됨. 기증 미술품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작품규격, 작품설명, 소장처, 소장자명, 작품 게시장소 등 해당 미술품이 기증 당시 보유하고거나 알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미술은행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함. 기증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서 미술은행은 기증의 업무를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와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되는 측면이 있고, 기증자를 설득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처리하는 행정 능력의 발휘도 요구됨.

- 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이 소장하던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공공자산화하여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원로작가의 상속인과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미술품 물납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상속세 금에 대한 미술품 납부는 세금 납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미술품 평가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상속세 물납⁹⁾ 도입 여부에 대한 실현 가능성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즉, 상속세 물납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물납된 미술품의 적절한 평가와 물납된 미술품의 관리의 어려움 때문임.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이 있는 경우, 그 미술품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 감정센터에서 상속세 물납에 관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술품에 의한 물납의 세액을 평가하여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서 해당 물납된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를 미술은행과 같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유산화라는 물납제의 취지와 상속세 물납의 절차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미술품 감정과 관련해서는 진위감정과 시가 감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태조사 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정센터의 감정 대상 미술품에 대한 상태조사를 실시함.

□ 감정 기준 자료 구축

- 감정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감정 기준 자료를 축적하고 미술계에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적 역할도 가능해야 함. 또한 감정센터는 감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결과물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감정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8)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양현미,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41집: 67-101,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pp.91-95 참조.

9) 프랑스에서는 일반세법(2019년 2월 1일 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제2권 세금징수, 제1장 세금 납부 중 1716조 제1항에 따르면, I. -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서적, 수집품, 문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의 납부에 의해 세금이 지불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지급 과정은 의회법에 따라 정해진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프랑스 이외에도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은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제도에 따라 상속세에 한하여 재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IHTA 230(1), (4)),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으나,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예술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조세기본법 224a(2)). 일본의 경우, 『美術品の美術館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3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등록된) 등록미술품의 경우 상속세 물납 허용 제도 등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를 통해 감정센터는 근현대미술의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자료를 구축하고,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자료를 정립하도록 함.

□ 감정 인력 양성

- 감정센터는 기존의 감정 인력 양성 방안들과 교육 과정들을 검토하여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함.
- 다만 설립 초기 감정센터의 구성과 동시에 인력 양성 사업을 즉시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의 출범 이후 1년 이후부터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시작함.
- 또한 지속적인 감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감정 인력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소정의 기관에의 감정 인력의 의무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

다. 감정센터의 운영 방안

□ 감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미술품 평가에 있어 요구되는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과 공정성임. 미술품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에 전문적인 소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그 전문적인 능력에 따른 평가가 진행됨에 있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의견이 표시되어지는 것이 중요함. 행정작용에 필요한 미술품 평가에 있어서도, 해당 미술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됨.
- 우선 인적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행정작용 과정에서 미술품의 평가에 참여한 감정인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그의 공정한 판단에 기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인 자신도 감정인으로서 준수 사항과 감정윤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절차적 공정성 역시 보장되어야 함. 여러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과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만,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 외부에서 쉽게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세스도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함. 미술품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평가 내지 감정 절차 자체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보다 어떤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감안해

야 함. 일반적으로 평가위원 3인 이상의 감정위원회 체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1인의 책임감정인의 감정의 결론을 감정전문위원 3인 내지 중대한 사안의 경우 5인의 회의를 통해 검증받는 시스템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책임감정인의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의 검토회의’의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심도 있고 책임있는 감정이 가능하고, 3인의 감정위원회 체제로, 책임을 회피하기 용이한 구조보다는 오히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음. 중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된 절차를 설정하여, 더 많은 전문위원이나 감정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함. 감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전문위원)이 간사 역할을 하여 감정전문위원회가 주최되고, 감정전문위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감정전문위원의 검토회의는 영상녹화될 수 있으나 감정센터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이는 감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중대성을 고려한 것임. 이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술품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간 의무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관한 쟁점 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전문감정인 및 감정전문위원회 위원 인력 풀의 유지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세미나 형식 등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서 감정서의 양식과 용어 정형화, 감정에 필요한 표준 등을 개발하고, 업데이트시켜가며 선진감정기법을 실무적으로 정착해나가는 작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면 한국 미술품 감정평가 체계의 수립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함.

제0조(감정센터)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를 둘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3.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0조제0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부받은 미술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정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진흥원이 정한다.

7 전담 기관의 설립 - 미술진흥원

■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가. 설립 필요성

- 기존의 미술 관련 지원 기관들이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술진흥법상 규정된 제도 시행에 따른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 업무, 재판매보상 청구권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미술품의 관리, 행정적·

사법적 목적을 위한 감정 업무 및 감정 기반 자료의 구축,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필요함.

나. 진흥원의 업무

□ 공적 목적의 감정 및 감정 인프라 구축

- 행정,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공신력있는 미술품 감정 시스템의 부재를 감안한 감정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에 대한 감정 및 조사를 담당함.
- 감정센터는 단순히 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역할 이외에도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를 정립함.
- 기존의 감정 인력 양성 방안들과 교육 과정들을 검토하여 체계적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함.

□ 공공미술품의 관리

-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취득과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전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의 취득, 관리 사무, 정부미술품 데이터베이스와 작품관리 시스템, 미술작품의 정기적인 재조사 등 정부미술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현재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분화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통합하여 업무를 담당함. 아울러 감정센터에서 미술품에 의한 물납의 세액을 평가하여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최종 결정한 경우 해당 물납된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를 미술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유산화라는 물납제의 취지와 상속세 물납의 절차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중 국가가 소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은행이 미술작품 설치 후 매 2~3년마다 점검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하며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수복·보존을 위한 별도 용역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미술은행이 판단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미술품의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수복 등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술은행에 미술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업무

- 미술진흥법상 미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이러한 의무 부과가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이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유형별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미술진흥법상 규정된 영업승계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되지 않고, 수리를 통하여 종전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 절차가 필요함. 이러한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업 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신고 의무 준수를 위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미술 관련 지원 기관에서 담당하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함.

□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초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진흥원이 재판매보상금 수령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재판매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재판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재판매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미술진흥원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 신고 정보, 미술품에 이용되는 재료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축된 작가별·시대별 재료, 기법 등 감정 기초 자료, 미술품의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준 자료, 미술은행이

취득, 운영하는 미술품 및 대여 절차에 관한 정보, 재판매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품 재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는 해당 정보의 성격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

다. 진흥원의 운영 방안

□ 미술진흥원의 조직 구성

- 진흥원은 3개 하부 조직(경영지원본부, 감정센터, 미술은행부)로 구성됨.
- 진흥원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감정 사업, 미술은행 운영 등 미술 시장에 진흥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정성 보장, 기관장의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뒤야 하며, 통상 감사의 상임·비상임 여부는 기관별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흥원의 정관에 상임감사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0조(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미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미술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기획, 전시 지원
4. 미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지원
5.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6. 미술품 및 작가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사업
7. 미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8. 미술진흥을 위한 유통활성화 지원
9.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10.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11.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처분
12. 소비자의 권익 보호
13.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업무
14. 미술 관련 기관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업무의 위탁 또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조(경비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0조(감사) ① 진흥원의 직무 및 회계, 공정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 정부 소유 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 미술품을 감가상각이 필요한 일반 물품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심미적 가치가 투영된 시장가격 등을 반영한 소장품 평가기능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다양한 미술행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법규 설정이 필요함.
- 정부 소유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의 미화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향유를 위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의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 큐레이팅과 정부미술품 전체에서 해당 미술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입기관의 장의 선호도에 따라 구입되는 현실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체 정부미술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팅 작업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전시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에 관하여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분화된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보다 전문적인 독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을 조달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한 법규가 필요함.
- 우선 문화재와 미술관 등에 소장된 미술품을 정부미술품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1항의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술진흥법에서도 예외도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적용 대상인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하는 미술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미술품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부미술품 자체의 전시나 대여 뿐 아니라 미술품의 이미지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필요함. 따라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부미술품의 제도 취지와 국민의 미술품 접근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취득 단계부터 부당하게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미술품의 이용과 국민의 이미지 접근에 관한 자유로운 권리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미술품에 자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저작권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술은행의 설립

□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의 통합

- 현재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에서 함께 운영됨. 미술품의 소유 기관이 형식적으로 국가인가 국립현대미술관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미술작품의 대여대상 기관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적 차이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미술작품의 구입과 그 과정에서 선정 기준, 대여의 일반적인 기준, 소장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이중적인 구조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을 뿐임.
- 매년 증가하는 미술작품 수에 따라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의 구입과 관리전환, 보존과 상태

조사 등 관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그 업무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추어 전문적 전담 직원의 안정적 배치가 미흡하여,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한 행정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 전반에 관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미술 컨설턴트와 큐레이터 등을 통하여 전시와 대여를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 디지털 바코드제도, 종합적인 정부미술품 데이터베이스와 작품관리 시스템, 미술작품의 정기적인 재조사 등이 미술은행에 의해 실시, 관리되어야 함.

다. 미술은행의 업무

□ 정부미술품 사무의 총괄과 관리

-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을 통한 형태의 기관인 “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정부미술품의 관리, 처분 업무를 담당함.

□ 정부 소유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업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은 그 소유가 대체로 일반인이나 사기업체 법인인 경우가 많지만,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국가가 그 소유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미술은행이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심의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작품 설치에 있어 업체 중심에서 미술가가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작품을 설치하도록 작가 중심으로 전환함. 아울러 설치 과정 중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및 조경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작품 설치에 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미술은행 소속의 미술관련 전문가 판단에 따라 작품 제작에 대한 일정 비용 지불 후 새로운 미술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미술은행 소속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작품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이에 관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노후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평가를 받게 됨. 국가가 소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은행이 미술작품 설치 후 매 2~3년마다 점검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수복·보존을 위한 별도

용역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미술은행 소속 전문가가 판단토록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공무원의 순환 보직을 통한 관리보다는 미술은행 소속의 미술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건축물의 저작권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탁된 공유미술품의 관리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은행은 2005년 미술은행이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남도예술은행과 인천미술은행이 설립되었고 그 외는 2012년 이후로 설립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됨. 현재 지방자치단체 미술은행으로는 인천 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전남 문화예술재단의 남도예술은행, 성남미술재단의 성남미술은행, 민간위탁의 경기물품거래소, 서울문화재단의 바람난미술 등이 있음. 지역미술문화 확대와 지역 작가의 지원이 목적이므로 지역문화와 취향을 반영하여 지방에 따라 선호하는 장르와 모델이 다르고 다양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의 관리위탁이란 해당 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입기관에 맡기고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소유의 미술품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행정재산인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특정 시설물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행위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은행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미술진흥법에 마련함.

제0조(미술은행)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미술진흥원 내에 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0조제0항제0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제작, 선정,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국가기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업무
 5. 정부미술품 및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정부미술품등”)의 유지 및 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6. 정부미술품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0조제0호0목 및 다목에서 정한 위탁 미술품의 관리
 8. 법령에 따라 미술은행의 업무로 정해지거나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미술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